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10. 28 선고 2022가단2263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0. 28.

주 문

1.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소유의 각 1/3 지분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2019. 5. 5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
2.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소유의 각 1/3 지분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, 가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9. 6. 7. 접수 제30345호로 마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,

나. 소외 E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 이훈재

별지